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현승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웃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의 좋은 점을 말해야 할 것인가? 그의 나쁜 점을 말 할 것인가? 생각컨대,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있고, 그를 존경하고, 그래서 그와 좋은 사이가 되고, 화목과 평화가 유지되며 공동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를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결과는 이웃들 사이에 혐오가 생기고 그로 인해 분노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인 선생과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선생은 촌지 먹는 사람', '이유 없이 체벌하는 사람', '참스승인지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할 사람'으로 선전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학생들의 지식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학교의 본업인 교육에 도움이 되겠는가? 교육은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존경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는 대신에 불신하고 경멸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그 선생의 말씀이 우이독경이 되고 말 것이며, 만약에 선생이 학생에 대하여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갖는다면 선생은 학생을 잘 가르칠 의욕을 갖지 못할 것이다. 사제지간에서 사랑이 먼저인지, 존경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랑과 존경이 상관관계임에는 틀림이 없겠는데 맹자님은 子孝父心寬이라 하여 자식의 孝가 먼저일 것을 말씀하였다.

교육개혁이 교사의 촌지 수납과 같은 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교사를 비리 교사로서 일반화하여 처리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람이 여럿이다 보면 비리를 저지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각료들 가운데도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학교에 촌지 고발 센터를 설치한다느니, 스승의 날을 학년이 끝나는 2월말로 옮겨야 한다느니, 학생들로 하여금 체벌 교사의 명단을 적어 내게 한다느니 하는 제안들은 교육의 기본인 존경과 사랑의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년 단축문제를 두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서 피켓을 들고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당국에 대해 거센 저항을 보였는데,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년 단축 문제는 하나의 촉발요인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교육계에 대한 비하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포자기 끝에 터져 나온 반발이라고 하였다.

교육당국도 교육계를 비하하려고 해서 비하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반발을 사고 싶어서 반발을 사는 것도 아닐 것 이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빈대를 잡는 일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좀 더 신중하게 전후좌우의 맥락을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다면 부담스러운 반발을 모면해 가면서 교육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 안타깝다.

안타까운 일은 지금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대학교육계가 모독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첫째, 개정법률안에는, 사립대학교 법인이사의 1/3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공익대표로 충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법인이사들은 공익을 대표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못하겠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이 된다. 우리 나라 전체 3백여 개의 사학법인 가운데 몇몇은 비리를 저지르는 법인일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조처를 취한다는 것은, 모든 사학들로 하여금 교육에서 손을 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사학들이 無主空山이 되면 과연 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으며, 다른 더 좋은 대안이라도 생기겠는가?

둘째, 또 다른 개정법률안에는 대학의 교무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왜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내막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어떤 대학에 비리가 있는 것은 교무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한 교무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그 대학의 총장이나 관련 인사를 비리로서 처벌하면 될 일이며, 그러한 한두 곳의 비리를 일반화하여 교무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대학 교무위원회를 모두 불신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민주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가 교무위원회까지 대통령령으로써 규제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퇴락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우선시 해야 할 일은 교육계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활력과 전문성을 고무하는 일일 터인데, 그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교육계를 비하하고 전진의 걸음걸이를 가로막을 법률안 같은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한글**